

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유승용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4. 2. 26.

사 회 건 설 위 원 회
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305호로 2024년 2월 8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상위법에 부합 되도록 재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위원회 기능상의 보완을 통해 장애인복지위원회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 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변경: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→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)
- 나.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추가(안 제2조)
- 다.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 구성과 연임 규정 제한 추가(안 제3조 ~ 제4조)
- 라. 위원의 해촉 및 회의 규정 수정(안 제5조,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입법예고(2024. 2. 13. ~ 2. 18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위원회 기능상의 보완을 통해 장애인복지위원회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제명에 “구성 및 운영”을 추가하여 조례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명을 명확히 하였고,
- 안 제1조에서는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2조를 조례의 근거 조항으로 추가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으며,
-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확대 하였고,
- 안 제3조제1항에서는 “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” 규정하였으며, 제2항에서는 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, 부위원장은

“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”하도록 개정하였고,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“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”는 조항을 신설하여 제2항에 대한 보안을 하고자 하였으며, 제4항에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과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을 위촉 위원으로 추가하는 등 위원회 구성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,

- 안 제4조에서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2항에 의거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,
- 안 제5조에서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제1항에 의거하여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,
- 안 제7조제4항에서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.

○ 검토결과

-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」는 2005년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를 설치·운영하고자 제정되었으며, 이에 따라 위원회가 설치(2007.10.26.)되었고, 위원회 운영현황은 2018년 서면회의 1회 실시 및 2019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운영되지 않았음.

서울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현황

구 분	내 용
구성인원	21명(당연직 3명, 위촉직19명) ※ 위원장(구청장), 부위원장(복지국장)
임 기	3년(2021. 3.11.~2024. 3.10.) ※ 연임가능
기 능	○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○ 장애인복지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구 분	연도별 회의 실시 현황		
	2018년	2019~2022년	2023년
운영횟수	1회	미실시	미실시
미실시 사유	서면회의 실시	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미실시	안건 없음

-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재정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해촉·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보강하고자 하였으며, 그 밖에도 제명 및 일부 미비했던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참고 자료

1 장애인복지법

제13조(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)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·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

제12조(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(이하 “지방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,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

1.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
2.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

3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9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.

②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,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(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)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
2. 영등포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
3.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

제10조(위원의 해촉) ①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
2.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
4.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
5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1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5.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